

중국, 수입 식용 농산물 원포장 및 재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 원포장 및 재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에 대한 답변

2024년 6월 18일,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과일, 야채 등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의 원포장 및 재포장 후 유통기한 표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함. 원포장된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의 유통기한 표기는 중국 해관총서(GACC)에서 발행한 법률 및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재포장된 경우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품질 및 안전 감독 관리에 따른 규정』에 따라 원래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함

1. 배경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품질 및 안전 감독 관리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함. 해당 규정에서는 수입 식용 농산물의 포장 또는 표기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행정 법규 및 식품 안전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2. 주요 내용

1)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 원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

- 수입 식용 농산물의 원포장에 대한 표기 요구 사항은 중국 해관총서(GACC)에서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을 참조해야 함

규정	내용
제30조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입 식품의 포장, 라벨, 표시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중국어로도 제공해야 함신선, 냉동 육류 수입 식품의 내외포장에 생산국가(지역), 제품명, 생산업체 등록번호, 생산 로트 번호를 중,영문 표시로 식별하기 쉽게 명기해야 함외포장에는 규격, 생산지, 생산일, 품질유지기한, 저장 온도 등을 중문으로 명기해야 하며 수출국가(지역) 공식 검사 검역 표시를 제시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출입국 검사검역부에서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감독, 관리함
- 또한, 수입 식용 농산물의 원포장에 대한 라벨링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할 수 있음
- * “식용농산물 시장판매 ”란 식용농산물 집중거래시장, 소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및 상점을 통해 식용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함

2)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 재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

-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의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공포한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품질 및 안전 감독 관리에 따른 규정』 제13조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수입하고 있음

규정	내용
제1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식용 농산물의 포장 또는 표기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행정 법규 및 식품 안전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국가(지역)와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중국어로 표기해야 함. 생산업체(유통업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2. 수입 신선 및 냉동 육류 제품의 외부 포장에는 규격, 원산지, 도착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 조건 등을 중국어로 표기해야 함 3. 재포장으로 판매되는 수입 식용 농산물의 경우, 원래 수입 식용 농산물의 모든 정보와 재포장 기업, 재포장 시간, 재포장 장소,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포장에 포함해야 함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포장 시, 원래 수입된 식용 농산물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재포장 기업, 재포장 시간, 재포장 장소,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ex. 수입된 코코넛, 포도 등을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함)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용 농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 여부 확인 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용 농산물은 중국 법률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특히, 원포장 수입 식용 농산물과 재포장으로 판매되는 수입 식용 농산물의 라벨 표기 사항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식용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원포장 및 재포장의 유통기한 표기 관련 기준을 확인하여, 판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라벨 제작에 유의해야 함

출처

Foodmate, 答复]进口食用农产品（非肉类）原包装及分装后是否需要标注保质期, 2024.06.18

Foodmate, 《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公布 自2023年12月1日起施行, 2023.07.23

Chemlinked,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2022